

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16982
결재일자	2016.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최속항	이재국	박태일	04/19 이용식		
협 조	<p style="text-align: center;">일자리정책담당                      한기섭</p>				

##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기 획 경 제 국**  
**일자리경제과**

#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확도 유지 및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불법·불량 계량기를 일소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I 관련 근거 및 현황

-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검사)
  -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면제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정기검사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 제외: 1)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2) 검정 또는 검사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등

### ▣ 2014년 조사 및 정기검사 현황(격년 실시)

합계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측중기	눈새김탱크	비고
1,785개	32개	681개	1,072개	-		

## II 검사기간 및 일정

- 정기검사 대상조사 : 2016. 7. 1 ~ 8. 31.(기간중 43일)
  - ※ 2014년 검사 계량기 1,785개 계량기 포함 실사현장 조사
- 검사기간 : 2016. 9. 21 ~ 10. 25
  - 동주민센터 순회검사 : 2016. 9. 21 ~ 10. 14 (17일)
  - 소재지 현장 출장 검사 : 2016. 10. 17 ~ 10. 18 (2일)
  - 미 검사에 대한 추가검사 : 2016. 10. 19 ~ 10. 25 (기간중 1일)
- 검사 일정표

동 별	검 사 일	동 별	검 사 일	동 별	검 사 일
성북동	2016.9.21(수)	동선동	2016.9.22(목)	돈암2동	2016.9.23(금)
삼선동	2016.9.26(월)	정릉1·2동	2016.9.27(화)	정릉3동	2016.9.28(수)
정릉4동	2016.9.29(목)	길음1동	2016.9.30(금)	석관동	2016.10.04(화)
돈암1·길음2동	2016.10.5(수)	안암·보문동	2016.10.6(목)	월곡1동	2016.10.7(금)
월곡2동	2016.10.10(월)	종암동	2016.10.11(화)	장위1동	2016.10.12(수)
장위2동	2016.10.13(목)	장위3동	2016.10.14(금)		

## III 검 사 방 법

- 정기검사 대상기물의 철저한 조사
- 정기검사 공고 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별 순회 검사
-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현장 출장 검사

## IV 계량기 검사반 편성

- 반 장 : 지역경제팀장
- 반 원 : 지방행정서기 최숙향 외 2명(지역경제팀 직원)

## V 검사보조 및 기물 조사원 선정

- 모집방법 : 공공근로자 활용
- 선정인원 : 4명(계량기 기물조사 및 검사)

- 선정기준 :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유경험자 우선선정
- 업 무 : 계량기 보유 소재지(각동) 현장출장 방문조사 및 검사업무 보조
- 근무기간(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 기 물 조 사 : 2016. 7. 1. ~ 2016. 8. 31.(기간중 43일)
  - 동순회검사 보조 : 2016. 9. 21. ~ 2016. 10. 14.( 17일)

## VI 검사결과 및 미수검자 조치사항

- 합격된 계량기에는 2016년도 정기검사 합격필증 부착
- 불합격 계량기는 재 검사 또는 수리 검정을 통하여 조치완료
- 수리불가 계량기는 계량기 소유자 입회하에 파훼처분 권유(재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 미수검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단 고의가 아닐 경우 정기검사 기간외에도 검사권장)

## VII 세부 시행계획

구 분	세 부 시 행 계 획 내 용	비 고
1. 계량기 조사원 교육	가. 일 시 : 2016. 7. 1(금) 나. 장 소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다. 교육내용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숙지 : 해당 기물을 보고 실습 ○ 정기검사 통지서 작성요령 ○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조사 수검표 작성요령 라. 조사기간 : 2016. 7. 1 ~ 8. 31(기간중 43일) 마. 조사방법 : 계량기 보유 소재지(각동) 현장출장 방문조사	
구 분	세 부 시 행 계 획 내 용	비 고
2. 정기검사 실시 공고	가. 검사실시 1개월 전에 아래사항에 대한 공고문을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구청, 동주민센터) ※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조 ○ 검사일시 및 장소 ○ 검사대상 계량기 등	8월중 정기검사 실시공고

<p>3. 계량기 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p>	<p>가.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나.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분동 및 추도 기물수에 포함)을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 작성  다. 정기검사 수검통지서 교부 시 수검조사서의 수령인 란에 반드시 수령인을 확인(서명 또는 날인)</p>	
<p>4. 검사</p>	<p>가. 검사 실시전에 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기구 및 기준기를 점검 준비  나. 각 동장은 검사당일 09:30까지 수검 장소에 아래사항 준비  ○ 책상, 걸상, 필기구  ○ 단, 우천시는 비를 피할수 있는 장비 준비  ※ 텐트 등 (우천 시에도 검사는 일정대로 시행)  다. 검사 전날당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지자에게 유선으로 검사 토록 통보  ※ 분동 및 판수동저울의 추도 검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검사 당일 지참 하여 검사를 받도록 통보  라. 검사는 구청 계량담당 공무원이 시행  마. 정기검사의 합격 기준 아래와 같음(시행령 별표7)  ○ 검정기준에 적합한 계량기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  바. 유의사항  검사시 분동, 추 등은 별개의 검사 대상이므로 저울이 불합격 되었다 하여 분동, 추 등도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별도로 검사하여 조치</p>	
<p>5. 합격계량기 조치</p>	<p>가. 정기검사 합격된 계량기에 대하여는 2014년도 합격증 인을 제거 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정기검사 합격증 인을 표시  1)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은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2) 이전 정기검사 필증과 구분하기 쉽도록 다른색으로 제작</p>	
<p><b>구 분</b></p>	<p><b>세 부 시 행 계 획 내 용</b></p>	<p><b>비 고</b></p>
<p>6. 불합격 계량기 조치</p>	<p>가.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  나. 불합격 계량기의 조치  1) 표시대상  ○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저울  2) 불합격계량기 조치  ○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이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p>	

	<p>1) 2개월 이내에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검사필증이 없는 경우</li> </ul> <p>2) 검정이나 교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계도</p>	
7. 소재지 현장 출장검사	<p>가. 검사대상</p> <p>1) 수검자는 소재지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li> <li>○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li> <li>○ 동일지역에 집중분포하는 저울(백화점,마트 등)</li> </ul>	
8. 미수검사 조치	<p>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p> <p>1)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b>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b></p> <p>나. 고의가 아닌 불찰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검사 기간 외라도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의 실시</p> <p>1) 미파악된 계량기 누락, 검사 제도를 모르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를 위함</p>	
9. 행정사항	<p>가. 정기검사용 각종 인쇄물을 조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06월중 인쇄물 제작</li> </ul> <p>나. 계량기 검사보조원 및 기물조사원 교육 철저</p> <p>다. 7월~8월 성북소리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에 정기검사 실시에 대한 홍보실시</p> <p>라. 합격 및 불합격 라벨 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매일 수불부 사항을 점검하고 잔여 매수 확인에 철저</p> <p>마. 합격된 계량기의 합격 라벨번호는 수검 조사서에 반드시 기재</p>	

## VIII 소 요 예 산 - 총 2,550천원

- 계량기 검사 통지서, 합격필증, 부정계량기 표시증 인쇄비 : 550천원
- 검사장비 임차비 : 1,300천원
- 계량기 조사 및 검사관련 업무추진비 : 700천원

## IX 행 정 사 항

- 계량기 검사에 따른 홍보

- 동주민센터 (통·반장 및 직능단체 회의시)
- 홍보담당관 (우리구 홈페이지, 성북소리, 지역방송 등)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홍보
- 계량기 검사 일정 공고문 게첨 -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 각 동주민센터 협조사항
  - 각 동장은 해당 검사당일 09:30까지 수검장소에 아래사항 준비(동주민센터)
    - 천막1조, 탁자2개, 의자6개, 전원연결기구(리드선)
    - 단, 우천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장비 준비
    - ※ 텐트 등 (우천시 에도 검사는 일정대로 시행)
  - 검사전날 및 검사당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지자에게 유선으로 검사토록 통보

- 별첨 : 1.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홍보문안) 1부
2.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공고문안) 1부
3.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 및 수검표 1부
4.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1부
5. 사용중지 표시증 1부.
6.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1부.
7. 합격증인(라벨) 1부. 끝.

【별첨1】

## 201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안내(홍보문안)

- 관련근거 :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검사)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검사기간 : 2016. 09. 21 ~ 2016. 10.25
  - 동별 순회 검사 : 2016. 09.21 ~ 10.14 (17일)
  - 소재지 현장 출장 검사 : 2016. 10.17 ~ 10.18 (2일)
  - 미검사에 대한 추가검사 : 2016. 10.19 ~ 10.25 (기간중 1일)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장소 :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소재지의 관할 동주민센터
- 검사일정

동 별	검 사 일	동 별	검 사 일	동 별	검 사 일
성북동	2016.9.21(수)	동선동	2016.9.22(목)	돈암2동	2016.9.23(금)
삼선동	2016.9.26(월)	정릉1·2동	2016.9.27(화)	정릉3동	2016.9.28(수)
정릉4동	2016.9.29(목)	길음1동	2016.9.30(금)	석관동	2016.10.04(화)
돈암1·길음2동	2016.10.5(수)	안암·보문동	2016.10.6(목)	월곡1동	2016.10.7(금)
월곡2동	2016.10.10(월)	종암동	2016.10.11(화)	장위1동	2016.10.12(수)
장위2동	2016.10.13(목)	장위3동	2016.10.14(금)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됨.
-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2241-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북 구 청 장



【별첨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 호

#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2016년 9월 21일(수)부터 10월 25일(화)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전통시장, 철물점 등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일정 (검사시간 오전10시 ~ 오후3시), 우천시에도 검사 진행

연번	동 명	검 사 일 정	검 사 장 소	비 고
1	성북동	9.21(수)	성북동 주민센터	
2	동선동	9.22(목)	동선동 주민센터	
3	돈암2동	9.23(금)	돈암2동 주민센터	
4	삼선동	9.26(월)	삼선동 주민센터	
5	정릉1동, 정릉2동	9.27(화)	정릉2동 주민센터	
6	정릉3동	9.28(수)	정릉3동 주민센터	
7	정릉4동	9.29(목)	정릉4동 주민센터	
8	길음1동	9.30(금)	길음1동 주민센터	
9	석관동	10.04(화)	석관동 주민센터	
10	돈암1동, 길음2동	10.05(수)	길음2동 주민센터	
11	안암동, 보문동	10.06(목)	보문동 주민센터	
12	월곡1동	10.07(금)	월곡1동 주민센터	
13	월곡2동	10.10(월)	월곡2동 주민센터	
14	종암동	10.11(화)	종암동 주민센터	
15	장위1동	10.12(수)	장위1동 주민센터	
16	장위2동	10.13(목)	장위2동 주민센터	
17	장위3동	10.14(금)	장위3동 주민센터	
18	e-mart 미 아 점	10.17(월) 오전	e-mart 미 아 점	09:30 ~ 12:00
19	e-mart 하월곡점	10.17(월) 오후	e-mart 하월곡점	14:00 ~ 17:00
20	홈플러스 월곡점	10.18(화) 오전	홈플러스 월곡점	09:30 ~ 12:00
21	현대백화점 미아점	10.18(화) 오후	현대백화점 미아점	14:00 ~ 17:00

- 정기검사 면제대상: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 벌칙규정(제76조 제2항 제13호)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사용한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 북 구 청 장

(일자리경제과 ☎ 2241-3964)



【별첨4】

##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정기검사 수검 의무자	영업장소재지	(☎) -			
	상 호			성 명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검통지서번호	계량기명	형식 또는 능력	기물번호	사용목적(거래, 증명)

귀하 소유의 위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을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2016년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리오니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계량에관한법을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검사일시 : 2016년 월 일 (수검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2. 검사장소 : 동주민센터
3. 조사자 : (인)

2016년 월 일

### 성 복 구 청 장

##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수령 확인

위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정기검사에 따른 안내 및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수령자 : (인)

###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는 저울 사용자가 정기검사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자(SMS)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귀하의 정보는 사전알림서비스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명 (인) 핸드폰번호: \_\_\_\_\_

※ 본 통지서를 잘 보관하시고 검사 당일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별첨5】

## 사용중지 표시증

종 류		기 물 번 호	
사 유			

위의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검사자 : 계량담당 공무원 (인)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별첨6】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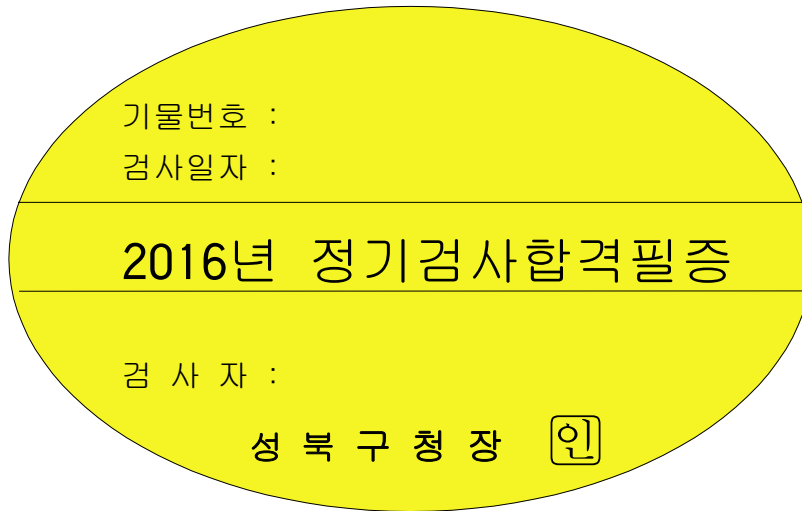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북 구 청 장 귀하

【별첨7】

## 정기검사 합격증인 (라벨)



( 가로5cm X 세로3cm )

- 바탕 색 : 노랑색
- 글 씨 : 검정색
- 재 질 : 스티커
- 제작매수 : 2,000매